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함

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20조의2 신설)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필요
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학력
및 자격의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
고사항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관리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2항 및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별표 5의2로 하고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4조 관련)”을 “(제15조제2항 관련)”으로 하며, 같은 표(중전의 별표 3) 제2호 번호 가목 번호 1)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의 보유자격 실무경력란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	--------

별표 5의2(중전의 별표 3) 제2호 번호 가목 번호 2)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의 보유자격 실무경력란 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	-------

별표 5의2(중전의 별표 3) 제2호 번호 가목 번호 3)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의 보유자격 실무경력란 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	-------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후단 중 “계산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제1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중전의 다목) 2)을

1)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별표 10 제1호라목(중전의 다목)에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10 제1호라목(중전의 다목)1)(중전의 2))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별표 10 제1호라목1)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1)부터 2)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로, “줄이거나 늘릴”을 “늘릴”로 하며, 같은 목1)부터 2)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전의 라목) 중 “가”를 “라목의 가”로 하

며, 같은 표 제2호에 위반행위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6호			
---	---------------	--	--	--

별표 10 제2호에 차목1)부터 차목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7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별표 10 제2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중전의 아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에 위반행위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4호			
---	---------------	--	--	--

별표 10 제2호에 아목1)부터 아목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7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별표 10 제2호에 위반행위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법 제30조	50	70	100
-----------------------------	--------	----	----	-----

로 제출한 경우	제2항제7호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3의 자격을 말한다.	<삭제>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학력 및 자격의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관리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 설>

제21조(유지관리교육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 설>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삭 제>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2항 및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
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
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585